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7
----------	-----

제출연월일 : 2006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기업지원과】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가 국가에서 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위임 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함.

### 【환경과】

- 「소음·진동규제법」및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사무”가 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토양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과 관련된 사무 등”이 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농정과】**

-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의 준공검사 사무”를 현지성에 맞게 시군에 위임함.

### **【축산과】**

- 「어선법」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말소에 대한 사무”가 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수산시설관리규정」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지성이 강한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함.

### **【지역개발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가 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삭제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 결정 중 경미한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사무를 현지성에 맞게 시군으로 위임함.

### **【민방위안전관리과】**

- “도유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무”가 「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함.

### **【교통과】**

- 「자동차 등록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현지성 및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군에 위임함.

### **【도로과】**

- “도유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무”가 「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산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업 지 원 과	27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개선·과기·수거명령 등에 관한 사항  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8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12호·제24호 나목·제25호·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일련번호 제13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일련번호 제27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일련번호 제1호(중전 제13호) 및 제11호(중전 제2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과	1  11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2항, 제4항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수질관리과란 다음에 농정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농정과	1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중 다음 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축산과 소관 일련번호 제4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일련번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산과	4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처분 승인권자 나. 재산처분의 제한 다.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 라. 재산처분 제한의 해제 마. 사업추진실태 보고 및 평가 바. 시설의 관리책임 등 사. 영어조합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해양수산업실시규정 제38조 동 규정 제39조 동 규정 제40조 동 규정 제41조 동 규정 제42조 동 규정 제43조 동 규정 제44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일련번호 제3호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제4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 16호로 하며, 일련번호 제12호(중전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일련번호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 역 개 발 과	12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동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17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포함)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결정(변경포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 일련번호 제31호 및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민방위안전관리과	31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32	○도유재산 용도폐지	동법 제11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교통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통과	1	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도로과 소관 일련번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로과	5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6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동법 제14조, 제20조

##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사무중 축산과 및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기업 지원과	1~26	(생략)		기업 지원과	1~26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27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개선·과기·수거명령 등에 관한 사항 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 수리 등의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8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8조
환경과	1	○소음진동배출시설규제에 대한 다음 사항(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인정 다. 가동개시의 신고 수리  라. 개선대체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마.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바. 개선명령 사. 조업정지명령 등 아. 조업정지명령, 허가의 취소 자. 사용중지, 폐쇄명령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동법 제10조제1호 동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21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19조제1항	환경과	<삭제>	<삭제>	<삭제>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동법 제23조	<삭제>	<삭제>	<삭제>	
	3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동법 제25조	<삭제>	<삭제>	<삭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조치명령 및 사용금지, 공사 중지, 폐쇄명령	동법 제26조	<삭제>	<삭제>	<삭제>	
	5	○이동소음의 규제	동법 제26조의2	<삭제>	<삭제>	<삭제>	
	6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방지	동법 제27조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번호				번호		
환경과	7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 관리	동법 제28조	환경과	<삭제>	<삭제>	<삭제>
	8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설치요청	동법 제31조		<삭제>	<삭제>	<삭제>
	9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삭제>	<삭제>	<삭제>
	10	○보고 및 검사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		<삭제>	<삭제>	<삭제>
	11	○청문(단,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 청장의 권한 제외)	동법 제54조		<삭제>	<삭제>	<삭제>
	12	○연차보고서의 제출	동법 제54조의2		<삭제>	<삭제>	<삭제>
	13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 청장의 권한 제외)	동법 제6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1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14~22	(생략)			2~10	(현행과 같음)	
	23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11	○..... ..... 가.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제4항
	24	나. ~ 라. (생략) ○토양오염 행정조치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생략) 나. 토양오염 철거명령에 대한 청문	동법 제26조의 4		12	나. ~ 라. (현행과 같음) ○..... ..... 가. (현행과 같음)	<삭제>
	25	○토양보전대책지역과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대책계획수립 시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삭제>	<삭제>	<삭제>
		나.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 명령, 사업승인 및 변경 승인, 사업실시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 토지이용 및 시설의 설치 제한	동법 제20조				
		라.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및 시설의 철거 명령	동법 제21조 제3항				
	26	○명령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24조		<삭제>	<삭제>	<삭제>
	27~30	(생략)			13~1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신설>	<신설>	<신설>	<신 설>	농정과	1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중 다음 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94조
축산과	1~3	(생 략)	이선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72조	축산과	1~3	(현행과 같음)	
	4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말소	수산시설관리 규정 제5조, 동규정 제6조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5	○수산시설 관리 감독자의 의무	동규정 제7조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6	○시설 유형별 관리감독 및 처분 승인권	동규정 제9조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7	○처분의 제한	동규정 제10조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8	○관리부의 비치	동규정 제12조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9	○관리상황의 조사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10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등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신설>	<신설>	<신 설>	<신 설>	4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처분 승인권자 나. 재산처분의 제한 다.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 라. 재산처분 제한의 해제 마. 사업추진실태 보고 및 평가 바. 시설의 관리책임 등 사. 영어조합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해양수산사업실시 규정 제38조, 동규정 제39조, 동규정 제40조, 동규정 제41조, 동규정 제42조, 동규정 제43조, 동규정 제44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역개발과	1~2	(생략)		지역개발과	1~2	(현행과 같음)		
	3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가림간판 규격의 설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		<삭제>	<삭제>	<삭제>	
	4~12	(생략)			3~11	(현행과 같음)		
	1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동법 제33조		12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동법 제33조, 제48조, 제53 조	
14~1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3~16	(현행과 같음)	17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변경포함)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결정 (변경포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제 13조
민방위안전관리과	1~30	(생략)		민방위안전관리과	1~30	(현행과 같음)		
	3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제방)의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	충청북도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조		31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0조	
	32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제방)의 용도폐지	충청북도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조		32	◦도유재산 용도폐지	동법 제11조	
교통과	1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카. (생략) <신설>	<신설>	교통과	1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10	(생략)			2~10	(현행과 같음)		
도로과	1~4	(생략)		도로과	1~4	(현행과 같음)		
	5	◦도유재산(도로) 용도폐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및 도로법 제28조 충청북도공유 재산관리조례 제11조		5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제11조	
	6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행정 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11조 및 제12조	6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동법 제14조, 제20조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과기·수거명령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과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의 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②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과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의 부담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6조제3항 각호의 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판매·사용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 또는 창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 및 검사설비·전기용품·서류·장부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음 각호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정기검사·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판매·사용금지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수거명령,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명령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1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생략)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과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직접 과기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당해 과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 당해 전기용품의 위해 여부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6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가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

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생략)

## 【 소음·진동규제법 】

**제9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 또는 공장의 부지 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가동개시의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15조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조업정지명령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신고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제25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의2 (이동소음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야기하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규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같다)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1조 (보고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

류·시설 또는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①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 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과태료)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⑤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 (과태료) ①~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⑥(생략)

### 【 토양환경보전법 】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군수·구청장 [당해 대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말한다.] 은 대책지역에 대하여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오염토양개선사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행위제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 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대집행)**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1조제3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 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의5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3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

### **【농어촌정비법】**

**제94조 (준공검사)** ①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

를 받을 수 있다.

- ②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
-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어선법】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어선의 소유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이를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서를,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선적증서를,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에 있어서는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의 지정 및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6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하며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때
3. 당해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어선 범시 행정】

제4조 (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 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 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 【어선법시행규칙】

제21조 (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1999.5.17>
5. 삭제 <2002.7.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이 말소 또는 상실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선박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소형 선박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별표 1에 의한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 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1999.5.17>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삭제<1999.5.1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

하는 항·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등록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범장(범선의 경우에 한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 나. 상갑판위의 용적
    - (1) 선수루의 용적
    - (2) 선교루의 용적
    -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기타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기타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제2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1999.5.17>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 (등록 등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한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
3. 당해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

**제72조 (등록업무의 실적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어선건조·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1999.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2-14호(2002. 2. 7)

제38조(시설의 처분승인권자) ①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이 지원하여 시설한 해양수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처분승인권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되며,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협회·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직접 보조지원하여 시설한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는 장관(장관이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처분승인권을 갖는 시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집행주체인 시설 및 정부지원 예산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설한 시설로 한다.

③이 장에서 "관리감독자"라 함은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를, "관리자"라 함은 시설의 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재산처분의 제한) ①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당초 목적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 및 시설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적은 사유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 시설의 소재지
4. 시설년도

5. 시설비(보조, 용자, 자담, 기타로 구분)

6. 시설의 규모 및 능력

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

8. 기타 참고사항(첨부서류)

가. 시설을 당초에 목적인 용도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의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

나. 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하여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시설을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

라. 시설을 매각·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또는 양도증서안

마.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 계획서

바. 시설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의 신청중 용자를 수반하여 시설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수협지회장 또는 여·수산업무를 취급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체의 침몰·파손 등으로 시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의서 없이 승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매각·양도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어야 한다.

1. 관리자의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운영하고자 할 때
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
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시·도지사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회수 및 해양수산시책에 따른 각종 시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유지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2. 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유희상태로 있거나 앞으로 가동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관리감독자가 말하는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제41조(재산처분 제한의 해제)** 영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거나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더라도 관리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사업추진실태 보고 및 평가)** ①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제32조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으로부터 보고된 보조·융자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분석·평가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별 분석·평가서를 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3천만원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집행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및 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의 증·감액 또는 사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평가환류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축소·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시설의 관리책임 등)** ① 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다만, 용자사업은 당해 용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개, 바지락살포 등 어패류종묘입식의 수산증식 사업과 단위사업당 1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 내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관리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 및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자금집행상황·사업추진 진도 및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 1회이상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시설의 관리상황을 조사하여 제3항에 의한 관리부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상황조사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기간만료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관리감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시설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20호내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는 별표3 해양수산사업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어조합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제2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관리감독자는 제38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산하기관·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①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① ~ ⑥ (생략)
- ⑦ 제10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생략)

제20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은 상실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

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 ②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같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마.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방안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폐지에 한한다)할 수 있다.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인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④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 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 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⑤등록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⑥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사실을 확인한 경우
  4. 법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당해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신설 2005.11.30)

⑦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 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코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주어야 한다.

② (생략)